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25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3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무상대여 대상 범위 확대	15
※ 참고자료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하며, 나아가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

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를 선도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임(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보존·관리

현행	개정안
	3. <u>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홍보·전시·기념사업</u> 4. <u>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u> 5. <u>세계 분쟁·갈등 지역의 여성 인권 침해와 평화 저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u> 6. <u>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u> 7. <u>그 밖에 여성인권과 평화에 관한 사업 또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u> 8. <u>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⑥ <u>국가는 재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u> ⑦ <u>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u> ⑧ <u>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u>

현행	개정안
	<u>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⑨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현행법 제11조 및 제12조¹⁾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역사 조사·연구, 그리고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²⁾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등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음.

- 관련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민간보조사업(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위안부 관련 기록물 발굴·조사, 기록사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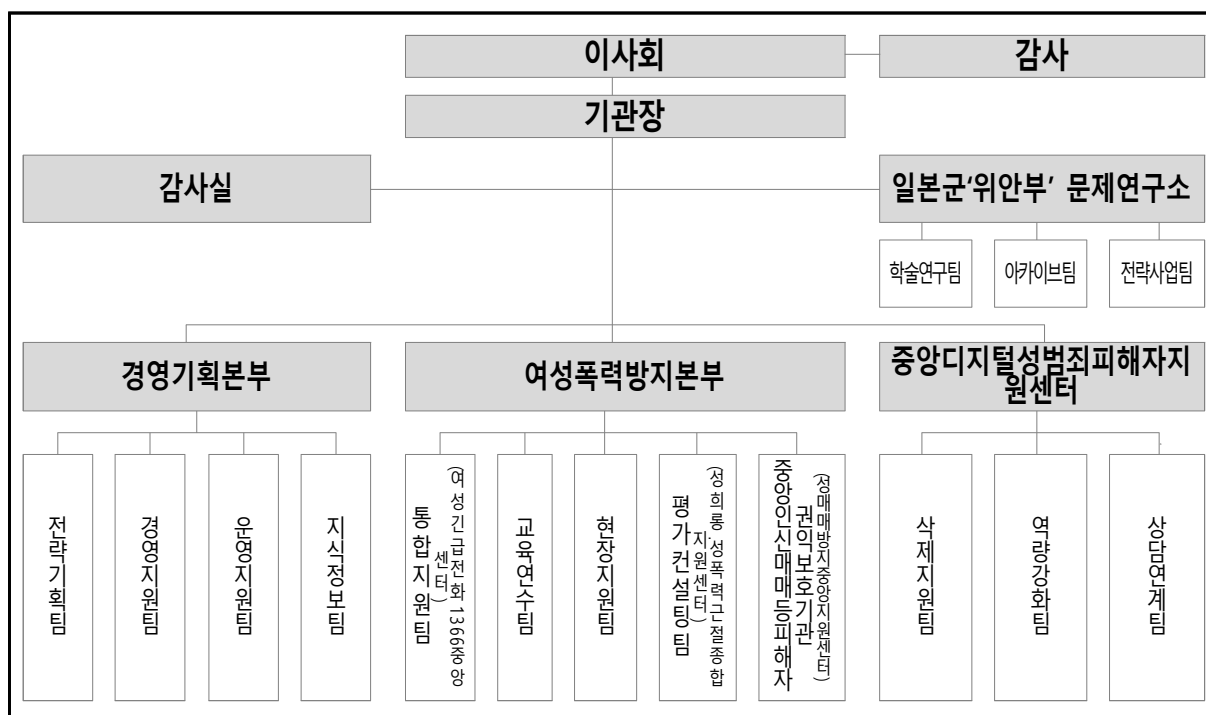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의 해제(解題)·번역,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부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³⁾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2021. 3. 9. 신설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도 >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조직 및 인력 현황 > 4)

구 분	주요업무	직원(명)
소 장	· 연구소 총괄	소장(1)
학술연구팀	· 자료조사, 연구기획, 연구서 발간 · 웹진<결> 및 뉴스레터 운영	팀장(1) 팀원(4)
아카이브팀	· 아카이브814 운영 · 일본군'위안부' 자료센터 운영	팀장(1) 팀원(3)
전략사업팀	· 학술연구(국제컨퍼런스) 기획·운영 · 민간단체 교류협력, 전시사업 운영 · 생존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업 운영	팀장(1) 팀원(4)
계		15명

자료: 여성가족부

3) [참고자료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참고로, 2020년도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기관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⁵⁾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조사·연구 등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선도 관련 사업 등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임.⁶⁾

4) < 2025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합 계	예 산	비 고
인 건 비	606	· 정원 15명 기준 · 제수당(諸手當), 기본급만 반영 (퇴직금, 사대보험 제외)
사 업 비	1,920	
계	2,526	

자료: 여성가족부

5) 2020년도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 관련 기관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실 일본군‘위안부’ 전쟁범죄자료수집편찬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위원 1인이 수행하고 있음([참고자료 3]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 관련 기관 비교표)).

6) 참고로, 2019년 ‘여성인권평화재단 추진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취지임.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적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교류 등을 수행하고 세계여성인권과 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대의견을 낸 바 있음.

※ 여성인권평화재단 추진자문위원회 운영 개요(2019.05.~10.)

여성인권평화재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하도록 할 경우에는 현재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사업비 외에 회계 처리, 사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법인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경상경비 등 별도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여성인권평화재단에 대하여 국가가 재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5억원, 2030년 36억 6,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7억 6,600만원(연평균 35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국·공유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재단의 직원 수는 20명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

목 적	· 여성인권평화재단 근거법을 국회 통과 설득 노력 · 여성인권평화재단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구 성	공동위원장 2인(이연숙 前 정무제2장관, 정진성 서울대 교수), 부위원장 1인(여가부차관), 위원 21인(민간 20, 정부 1)
운 영	· 전체회의 4회(05.29, 06.28, 08.01, 10.29) · 운영소위원회 4회 개최(06.05, 06.12, 07.12, 09.03)
성 과	· 재단 설립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합의 도출 · 재단 설립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2019.10.~11.)

자료: 여성가족부

7)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건비	925	943	961	979	998	4,806	961
기본경비	987	1,006	1,025	1,045	1,065	5,128	1,026
사업비	1,488	1,517	1,546	1,575	1,606	7,732	1,546
자산취득비	100					100	20
합 계	3,500	3,466	3,532	3,599	3,669	17,766	3,553

주: 단수조정 등에 따라 합계 및 연평균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개정안과 같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할 것인지는 사업의 범위를 세계 여성인권과 관련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 대외적 업무 수행 측면에서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재정소요가 수반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개정안 제11조의5제7항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기부 및 접수 절

8) 법률의 제명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 1. 30. 개정, 2024. 7. 31. 시행)되었음.

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⁰⁾.

다음, 개정안 제11조의5제8항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자료의 경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유사 입법례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0조¹¹⁾는 기념사업회가 자료의 열람·

10) 「도서관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0조(자료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 등)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 등의 측면에서 인력 및 업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설립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전시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입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나,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는 물품지원 등 생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제11조의5 제8항과 관련하여서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자료를 재단이 대여하거나 위탁 전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재단의 설립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6개월’은 짧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4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여성평화재단이 수행할 사무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¹²⁾ 여성평화인권재단의 사업 내용을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민간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국가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자료의 대부분을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 민간 소유의 자료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개정안 제11조의5제5항제2호에 ‘지정’을, 같은 항 제4호에는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문구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눔의 집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사업 내용이 기존 위안부 관련 기관·단체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 조정과 지원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개정안 제11조의5제8항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은 중앙집중적 구조를 고착화(固着化)하여 지역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12) 이와 관련하여 [참고자료3]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 관련 기관 비교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추진되었으며, 개정안은 그 실효성과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정신대연구소는 개정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명예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하며,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예우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무상대여 대상 범위 확대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제11조제1항¹³⁾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u>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u>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 ----- ----- ----- <u>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u>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¹⁴⁾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별표에서는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특례신설기준¹⁵⁾ 중 구체성의 요건과 보충성의 요

-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별표]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건16)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특례대상 중 ‘학예 활동, 공동 조사 등’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구체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 제12조17)에 따르면 사업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보충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서 공유재산의 특례(무상 대부 등)를 허용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다른 기관·단체·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에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이중(二重) 지원에 해당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행법 제13조가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를 허용하는 것일 뿐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며, 실제로 일본군‘위안부’ 기념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을 입법화하여 무상대여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국가 및 지방 재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므로, 개정안을 수

-
-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는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①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공익성), ② 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구체성), ③ 예산 지원 등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보충성), ④ 특례의 존속기간이 목적에 적절할 것(존속 기한의 적절성)을 규정하고 있음.
-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50

【참고자료】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023년	1,565	여성가족부 직접 수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 및 청소년 작품공모전 개최
2024년	1,077		
2025년	1,045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및 간병비 지원 등

자료: 여성가족부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8년	930	860	’18.7~’19.3, 민간경상보조
2019년	1,230	1,112	’19.4~’19.12, 민간경상보조
2020년	1,798	1,662	민간경상보조
2021년	2,254	1,96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사업
2022년	2,254	2,054	
2023년	1,754	1,527	
2024년	1,954	1,819	
2025년	1,883	-	

자료: 여성가족부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주요 업무(2025년도 기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

① 자료 조사 및 연구 기획

: 일본군‘위안부’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기획을 통한 연구 기반 마련

② 연구서 발간

: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주요 연구서 발간 등을 통한 대국민 접근성 확대

③ 국문웹진 운영 및 시스템 재구축

: 웹진 <결> 콘텐츠 제작·발행 및 시스템 재구축

④ 영문웹진 및 영문콘텐츠 발행

: 일본군‘위안부’문제 및 전시성폭력 관련 전문적 지식을 영문 콘텐츠로 제공

⑤ 디지털 아카이브 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 아카이브814를 통한 자료 수집·제공의 허브 기능과 역할 수행

⑥ 연구소 자료센터 관리운영

: 온·오프라인 자료센터 관리 운영

⑦ 자료구축 및 콘텐츠 제작 서비스

: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활동 자료 정리 및 아카이빙 등

< 국내외 교류 및 유네스코 지원 >

① 학술연구 전략사업

: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학술의 장 마련

② 민간단체 교류협력 사업

: 비영리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기념사업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③ 전시 사업

: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전시

④ 유네스코 활동 지원 사업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① 건강치료 지원

: 피해자 건강치료 지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등)

② 맞춤형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 기념일,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불편 해소 지원

③ 정서적 지원

: 주 1회 이상 상담을 통한 생활 모니터링, 연 1회 이상 피해자 방문 등 심리적 안정 도모

3.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 관련 기관 비교표

구분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¹⁸⁾ 한일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일본군‘위안부’ 전쟁범죄 자료수집편찬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업무	-자료 수집·연구 -자료·연구성과의 축적·관리 및 제공 -웹진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자료 수집·연구 -피해지역 실태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미 운영	미 운영
조직	-’25년 15명 (소장 1명, 팀장 3명, 팀원11명)	-연구위원 1명	-	-
특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연구기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 · 연구의 일환	-2020년 일본군 ‘위안부’자료집 편 찬을 끝으로 관련 연구사업 종료	- 2020년 연구사업 종료
비고	-2021년부터 출연 사업으로 전환	-연구위원 1인이 직접 연구 수행	-	-

자료: 여성가족부

18)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는 피해자 중심의 인권 회복과 국제 연대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반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 갈등 대응 중심의 학술기관이므로, 양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임.